

자동차 튜닝 사례집

2024

사례집 활용 관련 안내

본 사례집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용 시점에 따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고, 경우에 따라 일부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, 본 사례집을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CONTENTS

자동차

01

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

원동기	7
동력전달장치	10
주행장치	12
연료장치	14
길이 · 너비 및 높이	17
차체 및 차대(수납함설치)	19
연결 및 견인장치	23
승차장치(휠체어 좌석 설치)	25
물품적재장치(적재물수송용지지대) (적재함보조지지대(고정장치))(암롤(적재함제외))	33
소음방지장치	57
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	58
등화장치	59

02

자유롭게 튜닝(자율)이 가능한 항목 (경미한 튜닝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	63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	83
소음방지장치	88
조향장치	90
제동장치	93
연료장치 및 전기 · 전자 장치	99
차체 및 차대	100
연결 및 견인장치	117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	119
등화장치	125
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	128

03

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

길이 · 너비 및 높이	131
차체 및 차대	137
물품적재장치	139
승차장치	152
등화장치	154
소음방지장치	161

CONTENTS

이론 차

04

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

원동기	165
조향장치	166
차체 및 차대	167
승차장치	169
물품적재장치	170
소음방지장치	171
등화장치	172

05

자유롭게 튜닝(자율)이 가능한 항목 (경미한 튜닝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	177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	185
제동장치	189
차체 및 차대	193
소음방지장치	196
등화장치	197

06

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

차체 및 차대	201
---------	-----

제1편

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

원동기 / 동력전달장치 / 주행장치 / 연료장치
/ 길이·너비 및 높이 / 차체 및 차대
/ 연결 및 견인장치 / 승차장치 / 물품적재장치
/ 소음방지장치 /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/ 등화장치

THEME

01

원동기 >>>>

원동기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엔진파손, 출력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원동기 변경은 동일한 제작사의 제품에 한해 튜닝전 보다 출력이 동일하거나 향상되어야 함
(다만,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원동기 출력 예외)
 - 전상망에서 원동기제원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도면, 상세도, 설계도 생략 가능
 - 튜닝검사 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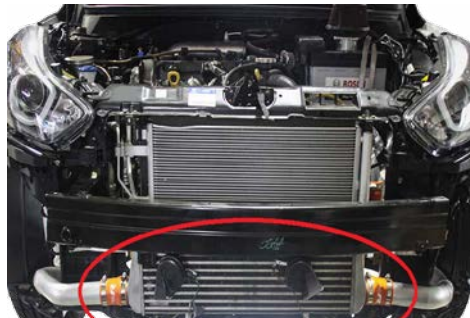
02

원동기 >>>>

터보차저, 인터쿨러



장착의 예



※ 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는 불가함. 다만,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위치 이동 가능
 - 소음기준 및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 - 기존에 설치된 터보, 인터쿨러 사이즈 변경 및 추가설치는 자유롭게 변경가능 (범퍼 외부 등 차체 돌출구조는 불가)

THEME

03

원동기 >>>>



저공해 엔진



장착의 예



※ 경유연료사용에서 LPG, CNG 등으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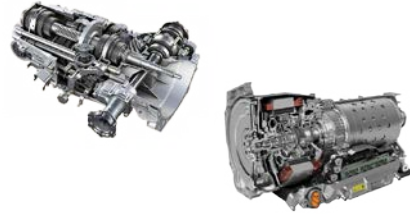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저공해 엔진만 튜닝가능
 - LPG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함
 - 의무사용조건 및 보조금 지원관련 문의는 관할관청 문의

THEME

04

변속기변경 (수동↔자동)

동력전달장치 >>>>



장착의 예



※ 변속기를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변속기변경(수동↔자동) 또는 변속단수가 변경되는 경우(자동5단↔자동6단) 튜닝승인 대상임
 - 변속기 변경으로 등속조인트, 추진축을 개조하는 경우 불가(순정부품 사용 필수)

THEME

05

동력전달장치 >>>

원치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와이어로프 등으로 감아 중량물을 끌어당기는 장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, 전기식원치를 제원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튜닝 해당, 승용자동차는 범퍼 및 레일의 절개등이 없는 범위 이내
 - 적재함에 설치하는 원치는 화물적재공간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며, 하대 읍셋 변경으로 인한 하중계산 필수 및 튜닝 승인대상
 - 동력인출장치만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튜닝 적용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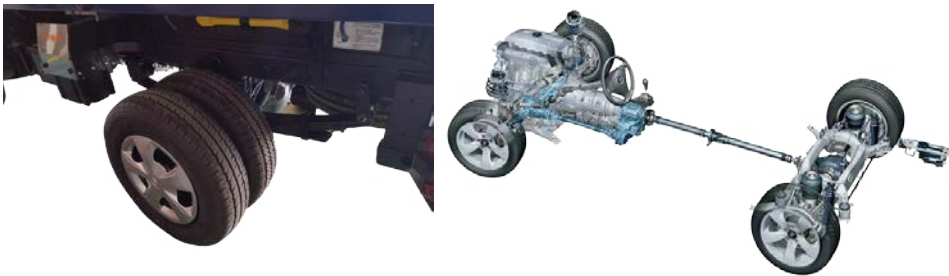
06

주행장치 >>>>

복륜설치, 4륜구동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후륜을 2개타이어 설치, 4바퀴 모두 구동가능하게 변경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
■ **참고사항**

- 복륜설치 및 4륜구동장치 변경은 제작사의 순정부품만 사용하여 튜닝
- 튜닝승인 신청시에 비교제원 첨부

*비교제원 : 축간거리 + 관련자료(순정부품 입증)제출

THEME

07

주행장치 >>>>

차체 너비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타이어, 휠 등의 변경으로 차체너비가 바뀌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조향장치 및 차축의 변경(연장)이 없어야 함
 -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(차체가 타이어를 덮는구조)
 - 주행장치(타이어 등) 변경 없이 단순 차체 너비만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
 -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으로 타이어 돌출 되는 구조는 승인불가
 - ‘차체너비변경’ 튜닝 후 제원이 변경되는 타이어, 휠을 변경하는 경우 재튜닝

THEME

08

연료장치 >>>>

휘발유/엘피지/CNG겸용



장착의 예



※ 사용연료를 휘발유/CNG/LPG 겸용으로 사용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연료의 종류별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
 - LPG가스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
 - 압축천연가스(CNG)용기 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

THEME

09

연료장치 >>>

경유/CNG/LNG혼소



장착의 예



※ 2종류 이상의 연료를 동시 또는 단독 사용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연료의 종류별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
 - 압축천연가스(CNG)용기 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
 - 주행 중 혼소형태 유지하여야 함
 - 운전석에서 연료전환 가능한 조작장치 설치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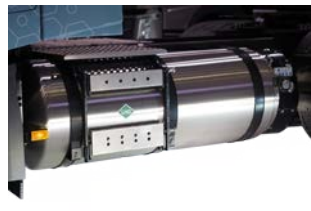
10

연료장치 >>>>

연료탱크 추가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의 장치변경
- **참고사항**
 - 추가되는 연료탱크는 1개만 가능
 - 연료탱크, 연료라인, 호스, 밸브는 제작사 인증부품을 사용
 - 연료탱크의 크기변경 가능
 - 최초로 장착된 연료탱크 1개의 용량 범위내에서

THEME

11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하이루프/팝업루프



장착의 예



※ 천정을 높혀 모니터 설치 등 이동편의성 향상목적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천정의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(승용만 해당)
 -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에 적합하여야 함
 - 팝업루프는 2중 잠금장치 설치(캠핑카에만 설치 가능)
 - 승합자동차는 보강재 등 상세도면첨부(규격, 주요골격)

THEME

12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너비 및 높이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타이어 휠 등 주행장치 변경으로 차체 너비 · 높이가 바뀌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조향장치 및 차축의 변경(연장)이 없어야 함
 - 주행전복 가능성 값에 대한 계산식 첨부
 - 휠 및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을 것

THEME

13

차체 및 차대 >>>>

자동차 외관(캐빈)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외관을 변경하고자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동일한 차체 또는 호환되는 차체의 외관으로 변경가능(제작사 등 확인필요)
 - 변경되는 부품의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

THEME

14

차체 및 차대 >>>>

주차단속용 카메라, 전광판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지자체 등에서 주·정차위반 단속을 위한 장치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전광판 설치는 공익목적의 자동차에 제한적으로 튜닝허용(도로보수, 교통안내)

THEME

15

차체 및 차대 >>>>

도로작업용 유도표시 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도로보수 등 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
- **참고사항**
 - 유도표시등 등광색은 황색만가능(단, 소방용자동차는 적색 가능)
※자동차 안전기준 제58조에 적합할 것

THEME

16

차체 및 차대 >>>>

축간거리 축소



장착의 예



※ 자동차 적재함의 길이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축간거리 축소는 자기인증(제작)된 자동차의 축간거리로만 가능
 - 축간거리 증가는 불가(원상복구 제외)
 - 축간거리 축소는 동일제작사, 동일축 구성방식의 동력전달장치 순정부품사용

THEME

17

연결 및 견인장치 >>>>

연결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장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인증 받은 인증서류 제출
 - 등화장치 및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구조 일 것
 -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전기 커넥터 필수 설치
 - 제작사에서 옵션(선택사양)으로 출고된 연결장치는 경미한 튜닝임
 - 연결장치 스티커 부착위치 도면에 표기

THEME

18

연결 및 견인장치 >>>>

구난형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사고 또는 고장난 자동차를 구난·견인하기 위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견인능력에 대한 자료 제시 및 검토 서류 제출
 - 피견인차의 이탈 방지 장치 설치 필수
 - 구난형은 황색경광등 설치가능(긴급자동차지정 불필요), 사이렌 불가

THEME

19

승차장치 >>>>

특수형 승합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이동검진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승합자동차의 승차인원 10인 이하 가능
 - 전기설비를 갖추는 경우 유의사항
 -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
 -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 기능을 갖추어 것
 - 직류(DC) 60볼트 또는 교류(AC)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
 -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추어 것

THEME

20

승차장치 >>>>

승차정원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승차인원을 증감하자고 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정원 증가는 제한적으로 시행
(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량의 최대 승차 정원까지 허용)
 - 모든 좌석 및 안전벨트는 인증부품 사용
 - 승합자동차를 동일한 승용자동차로 차종변경(승차 정원감소)하는 경우 좌석, 안전띠 승용 자동차의 인증부품 사용 확인

THEME

21

승차장치 >>>>

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어린이의 통학의 보호목적으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
- **참고사항**
 -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가능
 -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좌석 및 좌석안전띠 설치
 - 표시등 색상, 자동차의 구조기준,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등 확인
 -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('19. 11. 15)
 -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(썬팅검사, '21. 4. 17. 적용)
 - 운행기록장치 '21. 1. 1 적용 시행일 이전 '23. 1. 1 부터

THEME

22

승차장치 >>>>

장의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장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실과 운구함의 격리구조 확인
 - 장의차 소유자격, 차령 총당 연한, 구조기준 확인
 - 운행기록장치 설치
 -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(등록증) 필요
 - 장의자동차의 승객좌석은 운전석과 나란히 설치된 좌석에 한하여 인정

THEME

23

승차장치 >>>>

구급차/특수구급차



장착의 예



※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
- **참고사항**
 - 승합자동차, 화물(특수 차량으로 차종 변경시), 지붕 구조의 자동차만 가능
 -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, 차령, 구조기준 확인
 - 영상기록장치, 운행기록장치, 요금미터기 설치
 - 구급차의 구조기준 미달(구급장비 일부 제거) 튜닝 불가
 - 일반구급 ↔ 특수구급 상호간 튜닝 가능

THEME

24

승차장치 >>>>

캠핑카



장착의 예



※ 야영 등의 캠핑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차종의 제한이 없음(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)('20.2.28)
 - 침상 등 필수구조 기준 확인
 - 소화설비, 누전차단기, 후방시아확보 등의 안전장치 확인
 - 팝업루프 설치 가능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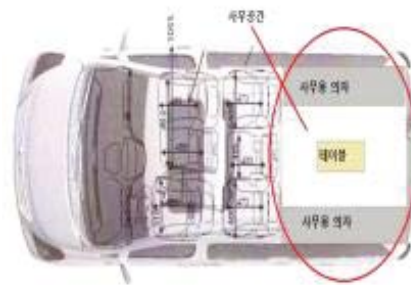
25

승차장치 >>>>

이동사무실차



장착의 예



※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
■ **참고사항**

- 사무용 테이블과 사무용 의자 설치 필수
- 사무 전용좌석은 승차인원에 미포함
- 테이블 최소 규격(450×400)(KSG 4203)
- 승차공간과 사무공간은 격리구조
- 캠핑카, 탕비실과 유사한 시설, 구조를 갖추는 경우 튜닝승인 불가
- 취침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팝업루프 설치는 튜닝승인 제한

THEME

26

승차장치 >>>>

이동목욕차



장착의 예



※ 이동욕조를 설치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목욕서비스 제공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욕조가 설치되는 이동목욕차는 승합, 특수자동차 가능
 - 물탱크와 구조물 중량은 총중량 이내에서 튜닝
 - 화물자동차는 목욕지원차로 튜닝 가능
(격벽으로 목욕 설비와 화물 적재 공간(2㎡이상)을 분리 할 것)

THEME

27

물품적재장치 >>>>

픽업덮개



장착의 예



※ 픽업자동차의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픽업덮개 설치 및 변경은 튜닝승인 대상, 픽업덮개 탈거는 경미한 튜닝 해당
 - 창유리 설치는 보호봉 기준 확인
 - 팝업 텐트 설치는 제한
 - 좌·우 개폐형 가능
 - 상부개폐형 가능(팝업루프와 동시 설치시 캠핑카 유사구조로 불가)

THEME

28

물품적재장치 >>>>

활어운송차



장착의 예



※ 활어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

- **관련근거:**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재량 산출 기준 확인 및 공간을 20% 이내 확인
 - 누전에 대한 안전 장치(누전차단기, 개폐기)설치
 - 일반 화물과 겸용으로 적재할 수 있는 구조 불가

THEME

29

물품적재장치 >>>>

철스크랩운반차



장착의 예



※ 철의 부스러기나 철 폐기물을 운송하기 위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재량 9.5톤 초과 및 총중량 20톤 초과의 자동차에 해당
 - 철강협회 등록 자동차에 한정하여 튜닝
 - 자동차 측면에 “철스크랩 운반 전용” 문구 표시
 - 적재함 측·후면은 안쪽으로 접히지 않는 구조일 것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필수

THEME

30

물품적재장치 >>>>

유압적하기



장착의 예



※ 짐을 운반 또는 높이 쌓고 들어 내리기 위해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하기 안전인증 대상 확인
 - 적하기 설치로 인한 중량분포, 최대적재량 확인
 - 탑승장치, 달기구 등 설치 불가

THEME

31

물품적재장치 >>>>

크레인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짐을 들어 올려서 상하좌우로 운반하기 위함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
■ **참고사항**

- '09. 10. 1. 부터 크레인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확인
- '21. 2월부터 크레인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 인증 고시」에 따른 “과부하 방지장치”에 대한 안전인증이 완료된 경우 튜닝승인 가능
- 크레인 설치로 인한 중량분포, 최대적재량 확인
- 탑승장치, 달기구 등 설치 불가
- 보조bum 설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서 제출

THEME

32

물품적재장치 >>>>

살수차



장착의 예



※ 공사현장 등에서 먼지 비산방지를 위하여 물 뿌리는 장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탱크 적재량 산출기준 확인
 - 살수장치 필수설치 및 돌출불가

THEME

33

물품적재장치 >>>>

탱크로리



장착의 예



※ 액체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탱크 적재량 산출기준 확인
 - 물질별 비중, 공간용적을 적용 확인

THEME

34

물품적재장치 >>>>

난간대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적재함에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제원의 허용차 이내의 난간대 탈거는 경미한 튜닝 대상
 - 난간대 설치 규격(200~900mm이하)확인
 - 철판(철망)설치는 경·소형 자동차에 한해 적용
 - 난간대 설치의 유형의 변경없음
 - 화물 자동차 캐빈높이 이내로 설치, 접이식 난간대 가능

THEME

35

물품적재장치 >>>>

포장탑



장착의 예



※ 적재함에 방수천막 등을 이용하여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경·소형 화물차의 일반형 포장탑 설치는 경미한 튜닝대상 (특수한 구조의 포장탑은 튜닝승인대상)
 - 중·대형 화물차는 중량허용차 초과 및 동급의 내장탑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대상(2019년 10월 14일 이전 등록 자동차)
 - 2019년 10월 15일 이후 중·대형 화물자동차는 튜닝승인 대상
 - 뒷문설치시에만 후단 오우버행 2/3 적용

THEME

36

물품적재장치 >>>>

셀프로더, 세이프티로더, 카캐리어



장착의 예



※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실어나르는 자동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정 운송대수를 초과하여 운송하는 구조는 불가
(가변형 슬라이딩 답판, 길이연장 등)
 - 운행 중 노면 낙하물에 대한 보호구조물 설치가능

THEME

37

물품적재장치 >>>>

내장탑, 냉동탑, 윈바디



장착의 예



※ 화물 탈락 방지와 냉동식품 보관 등을 위해 박스형의 지붕 등이 있는 형태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차체의 최대크기는 동형동급을 적용함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대상 확인
 - 환기구, 선반, 옆문설치, 칸막이, 지육걸이는 경미한 튜닝 대상임 (중량허용차 이내)

THEME

38

물품적재장치 >>>>

상승형 윈바디



장착의 예



※ 화물의 상·하차시 편리함을 위해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대상 확인
 - 상승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구조 기준 확인(경고음, 문구)
 - 상승높이 수치 기재
 - 후문과 후문상승가이드 뒷판 겹침량 불가

THEME

39

물품적재장치 >>>>

덤프형화물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실은 짐을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내릴수 있는 장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(밀폐형 덮개설치 가능)
 - 덤프의 적재량 산정 기준 확인
 - 덤프형의 적재함 크기는 자기인증된 덤프형자동차 중 축간거리가 같거나 작은 제원의 하대높이 범위 이내로 허용

THEME

40

암롤 (적재함제외)

물품적재장치 >>>>



장착의 예



※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변경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
■ **참고사항**

- 암롤 적재함을 제외하고 튜닝
- 암롤 적재장치 측정기준 확인
- 밀폐형 덮개 설치가능
- 암롤 작동을 위한 구조(조작장치, 암(후크))를 제외한 구조물 설치 불가

THEME

41

물품적재장치 >>>>

컨테이너 운반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컨테이너 표준 고정장치 위치, 수치 확인(ISO규격 적용) (20피트: 5580*2260)
 - 적재함 바닥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,410mm초과시 불가

THEME

42

물품적재장치 >>>>

리프트게이트



장착의 예



※ 적재함 후문에 리프트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답판높이를 기재(접이식의 경우 접은상태)
 - 측면 리프트게이트 설치가능
 -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불가
 - 후단오우버행 기준확인

THEME

43

물품적재장치 >>>>

이동화장실 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이동식 화장실차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확인
 - 각 칸별 분리구조 확인
 - 급수와 오수탱크의 용량은 적재량에 포함

THEME

44

물품적재장치 >>>>

가축운반 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가축운반목적으로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가축이 부상 또는 고통받지 않는 구조, 가축 움직임에 견고한 구조
 - 칸막이 설치대상, 기준 확인
 - 분뇨 처리구조, 조명기구, 신선한 공기 공급, 상부 덮개구조 등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대상

THEME

45

물품적재장치 >>>>

푸드트럭/푸드트레일러



장착의 예



※ 식음료 판매, 조리 등을 위한 장치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화물 자동차는 차종 변경으로 가능
 - 필수 설치 항목 : 식수통, 폐수통, 음식재료 보관 시설, 판매대
 - LPG사용시 완성검사 합격 확인(이동용 음식 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 기준)
 - 경·소형은 화물자동차 중·대형은 특수자동차로 튜닝
 - 바닥면적 제시

THEME

46

물품적재장치 >>>>

장비 운송용 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적재함 후면에 장비 운송용 발판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답판높이를 기재(접이식의 경우 접은상태)
 - 탈, 부착식 발판은 불가
 -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불가
 - 답판높이 600mm 이상 일시 후단오우버행 2/3 기준 적용

THEME

47

물품적재장치 >>>>

우드칩운반 자동차



장착의 예



※ 나무조각, 톱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자동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재함 좌, 우 측면에 “우드칩 운반차” 표시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대상
 - 적재량 산출기준 확인
 - 적재함 상부는 천막덮개 가능(상부 전체를 덮는 구조)

THEME

48

물품적재장치 >>>>

운송용 자동차 (유연탄, 곡물, 사료)



장착의 예



※ 적재물의 목적에 맞게 적재함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적재함 좌, 우 측면에 “000 운반차” 표시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대상
 - 비중별 적재량 산출기준 확인
 - 적재함 상부는 천막덮개 가능(유연탄 제외)

THEME

49

물품적재장치 >>>>

폐기물(재활용품) 수집 운반차



장착의 예



※ 재활용품을 수집·운반하기 위해 변경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밀폐형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5]
- **참고사항**
 -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소유자격 확인
 -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대상 확인
 - 밀폐형 덮개 재질, 기준 적정성 확인, 밀폐형 덮개 고시명 기재
 - 적재함 좌, 우 측면, 차체 전면에 “재활용품 수집차량” 표시

THEME

50

물품적재장치 >>>>

이동금고, 현금수송차



장착의 예



※ 현금 등 귀중품 운반목적의 금고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현금 수송차는 특수자동차 튜닝가능
 - 금고사양서, 이중잠금장치 등 확인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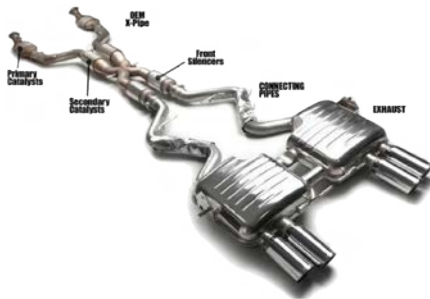
51

소음방지장치 >>>>

소음방지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개인의 취향에 맞는 소음기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
- **참고사항**
 -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
 - 소음기 사이즈 기재, 최소 배기관의 직경보다 커야하며 소음기 직경 100mm 이하는 상세도 제출
 - 배기구 방향, 최저지상고 확인
 - 배기구 개수는 최종소음기에서 나오는 개수 기록

THEME

52

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>>>

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적의 장치 설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
- **참고사항**
 -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확인
 - 환경부 인증 매연 저감 장치만 장착 가능

THEME

53

등화장치 >>>>

경광등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긴급자동차 등에 긴급함을 알리기 위한 등화장치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긴급자동차 지정 필요(소방차, 혈액공급차, 구난차, 노면청소차 제외)

THEME

54

등화장치 >>>>

주간주행등(기타등화)



장착의 예



※ 낮에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전면에 설치하는 등화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자기인증등화는 경미한 튜닝대상 (차체의 변형, 가공 없는 경우에 한함)
 - 공인기관의 등화장치 시험성적서 제출시 튜닝승인 가능
 - 안전기준에서 정한 작동조건 확인

제2편

자유롭게 튜닝(자율)이 가능한 항목(경미한 튜닝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/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
/ 소음방지장치 / 조향장치 / 제동장치
/ 연료장치 및 전기 · 전자 장치 / 차체 및 차대
/ 연결 및 견인장치 /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
/ 등화장치 /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

THEME

01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(차체 길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에 추가 설치하는 보조범퍼는 차체보호 목적으로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만 길이 허용(금속재질은 불가), 차체차대 항목 범퍼의 변경과 동시설치 가능하나 길이허용은 보조범퍼에 한정하여 허용
 - 번호판, 등화장치를 가리는 구조는 불가함
 -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안전기준에 위험을 주는 구조 불가
 - 인증기준 또는 시험성적서 필요없음

THEME

02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후부에 탈 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(차체 길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전거를 차체외부에 고정하여 운송하기 위한 캐리어
- **참고사항**
 -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만 경미하게 적용하며, 등화장치를 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
 -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구조일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대상확인 (관할관청)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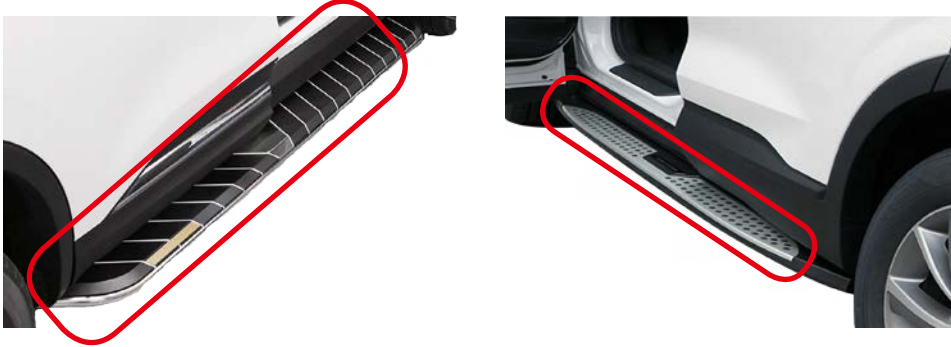
03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승하차용 보조발판 (차체 너비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노약자, 어린이, 여성 등 승하차에 도움 되는 장치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의 최 외측으로부터 좌, 우 각각 50mm이내일 경우(좌우합 100mm)
 -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구조가 아니어야 함. 야간사용을 위해 조명을 설치할 경우 조명은 정차 시에만 작동되는 구조는 허용

THEME

04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포장탑 - 경·소형 화물자동차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포장탑은 비가림 등을 목적으로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구조 장치임
- **참고사항**
 - 경 · 소형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며 특수구조(뒷문, 내부 측면철판(합판포함) 등)의 포장탑은 튜닝승인 대상
 - 컨버터블형 포장탑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미한 튜닝 적용

THEME

05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포장보관대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화물자동차의 포장덮개, 부속물건을 별도의 보관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
- **참고사항** : 포장보관대는 높이기준에서 적용됨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너비 방향, 길이방향 초과는 경미한 튜닝 적용불가

THEME

06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루프캐리어(루프박스)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수화물 등을 안전하게 루프박스에 보관 · 운반하는 장치
- **참고사항**
 -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(루프랙에 설치 또는 차체 설치)
 - 너비 또는 길이 초과시 경미한 튜닝 적용 불가

THEME

07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수화물 운반구 (천정절개형 제외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루프박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화물 운반, 보관 장치
- **참고사항** : 바람막이 일체형 및 차체일체형도 경미한 튜닝적용

THEME

08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상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(차체 높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량내부에 적재가 불가능한 자전거 등을 차체 상부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장치
- **참고사항** : 자전거캐리어는 탈,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체너비와 길이를 초과할 경우 경미한 튜닝 적용 제외

THEME

09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스키캐리어 (차체 높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량내부에 적재가 불가능한 스키 등을 차체상부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장치
- **참고사항** : 스키캐리어는 차체너비와 길이를 초과할 경우 경미한 튜닝 적용 제외

THEME

10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루프탑 바이저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루프탑 바이저는 차체 주행중 바람의 흐름을 변경시키기 위한 구조물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높이기준에만 적용, 너비와 길이방향을 초과할 경우 경미한 튜닝제외
 - 예리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설치

THEME

11

안테나 (차체 높이기준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에 설치된 편의장치(TV, 라디오, GPS 등)용 안테나
- **참고사항** : 특수한 구조의 장치를 작동시키는 안테나는 제외(ex: 무선통신 기지국 안테나, 방송중계용 안테나 등)

THEME

12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컨버터블탑 롤바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롤바는 차량의 전복시 차체 및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
- **참고사항** : 롤바설치로 인한 너비와 길이를 초과할 경우 경미한 튜닝 적용 불가

THEME

13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유리지지대 - 경·소형 화물자동차 (차체 높이 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유리지지대는 유리운송을 위해 적재함에 설치하는 운송틀
- **참고사항** : 차체의 너비 및 길이방향 초과 불가

THEME

14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루프탑 텐트 (차체 높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량 상부에 야영 등 목적으로 캠핑용 텐트를 설치하는 구조물
- **참고사항**
 - 루프탑 텐트는 차체 너비와 길이 초과 설치불가
 - 운행 중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구조(차체 돌출 등)는 설치불가

THEME

15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그늘막 (차체너비 및 높이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에 설치하는 차광막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길이 초과시 경미한 튜닝대상에서 제외
 - 높이 방향으로 경미한 구조및장치이며 너비방향 좌 · 우 125mm 이내 튜닝가능

THEME

16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교통단속을 위한 공공의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적외선장치 (카메라)
- **참고사항**
 -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(카메라)는 공공의 교통수단(버스 등)에 적용함
 - 별도의 등화를 설치하는 경우 불가

THEME

17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환기장치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(자연 환기, 전동환기장치)
- **참고사항** : 환기장치는 천정(지붕)에 설치가 가능하며 빗물 등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

THEME

18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무시동 히터 (차체 높이기준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량내부의 난방을 위한 연소식 및 전기작동 히터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, 배출구는 가연성 부분과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. 과열 방지구조 등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설치
 - 유해가스 실내 유입 등 안전사고 유의
 -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고(캠핑용 자동차 의무 설치)

THEME

19

무시동 에어컨 (차체 높이기준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량내부의 냉방을 위해 설치하는 에어컨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원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(누전차단기 등)를 설치하여야 함
 - 분리형 등 실외기 단독설치시 제원의 허용차 이내 설치 또는 안전덮개설치

THEME

20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태양전지판 (차체 높이만 적용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길이 · 너비 및 높이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을 위해 차체상부에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
 - 보조배터리 등의 설치로 차량중량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할 경우 튜닝 승인 대상임

THEME

21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흡기 및 배기다기관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출력향상 및 튜닝을 위한 튜닝용 흡배기 다기관의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흡기 및 배기다기관 설치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이 없어야 함
 - 배기다기관을 변경하는경우 열해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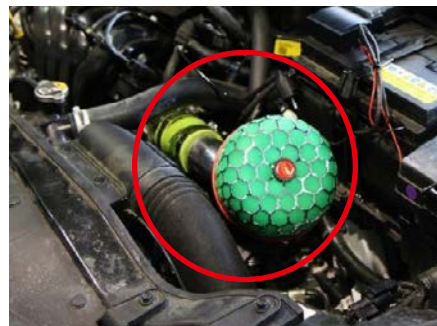
22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에어크리너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엔진의 흡기효율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튜닝용 에어크리너
- **참고사항** : 에어크리너 설치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이 없어야 함

THEME

23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스노클 등 원동기 및 동력발생장치



장착의 예



- 스노클 등 원동기 및 동력발생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, 다만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스노쿨은 차체상부에 흡입구를 설치하여 오프로드 자동차 등에 사용됨
- **참고사항**
 - 스노쿨설치는 제원의 허용차 이내이어야 함
 -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의 변경은 소음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이 없어야 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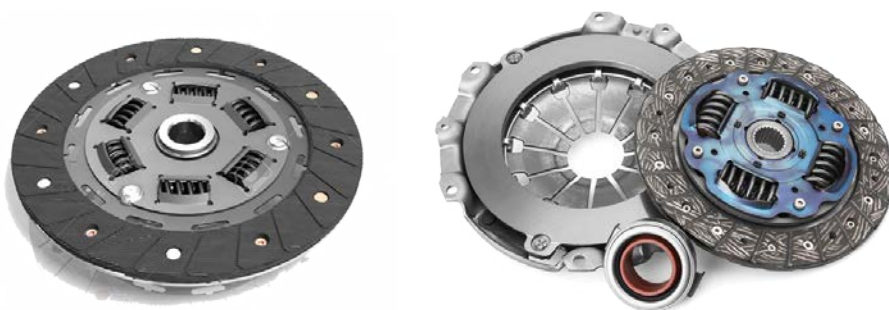
24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



장착의 예



-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변경, 다만 변속기 종류(수동↔자동)의 변경은 제외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클러치 마찰면의 마찰저항을 조절하는 튜닝부품
- **참고사항**
 - 튜닝용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설치로 인하여 변속기 설치위치가 변경되는 구조는 불가함
 - 등속조인트 및 추진축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불가함

THEME

25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동력 인출장치 및 BCT 공기압축기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의 동력으로 별도의 동력 발생(동력인출장치), 피견인차의 적재를 위해 견인차에 설치하는 펌프
- **참고사항**
 - 2019. 10월 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으로 경미한 튜닝 적용
 - 동력인출장치(PTO) 및 트랙터용 공기압축기는 제원의 허용차(중량) 이내이어야 함
 - 유압펌프 추가

THEME

26

소음방지장치 >>>>

배기관 팁



장착의 예



- 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소음방지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배기관 후단에 설치하는 배기팁
- **참고사항**
 - 소음기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으로 팁을 용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정
 - 기존 배기관에 별도의 팁 용접 설치 인정
 - 차체밖으로 돌출되는 구조 불가

THEME

27

소음방지장치 >>>>
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소음방지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순정소음기 또는 부품인증된 소음기
- **참고사항** :
 - 자동차의 순정부품 및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소음기는 경미한 튜닝 적용으로 자유롭게 설치, 변경설치, 탈거 가능
 - 단, 가변밸브 등이포함된 소음방지장치의 경우 튜닝대상

THEME

28

조향장치 >>>>



직경이 동일한 핸들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조향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경쾌한 주행을 위해 설치하는 튜닝용 핸들
- **참고사항** : 직경이 동일한 경우만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며 직경변경은 튜닝 승인대상임

THEME

29

조향장치 >>>>

핸들손잡이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조향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핸들에 설치하는 조향 보조장치
- **참고사항** : 핸들손잡이는 운전 편의장치로 에어백과 접촉되지 않게 설치

THEME

30

조향장치 >>>>

레버손잡이(장애인운전 보조장치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조향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
- **참고사항**
 - 기존 조종장치를 변경하지 않고 레버손잡이만 추가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
 - 비장애인도 설치가능

THEME

31

제동장치 >>>>

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정차시 차량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(ex:오토홀드)
- **참고사항**
 - 제동장치 변경은 인증받은 제품(순정부품 포함)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인증부품과 장착 차종 확인
 - 제동장치를 해체 변경하는 경우 불가

THEME

32

제동장치 >>>>

ABS보조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기계식 제동장치를 순정형 ABS장치로 튜닝
- **참고사항** : ABS관련 모듈 및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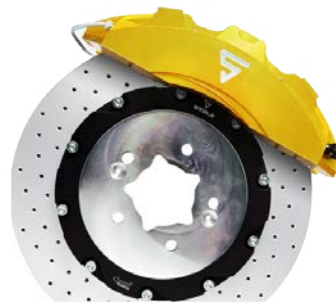
33

제동장치 >>>>

캘리퍼 및 부속장치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**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제동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튜닝용 캘리퍼 및 부속장치
- **참고사항** :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은 인증받은 제품(순정부품 포함)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인증부품과 장착 차종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

THEME

34

제동장치 >>>>

보조브레이크 페달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보조브레이크 페달은 긴급시 추가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운전교습용 차량에 주로 사용
- **참고사항** : 보조브레이크 페달 설치는 운전 보조장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제동계통의 변경이 있을 경우 불가

THEME

35

제동장치 >>>>

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운전자의 신체구조에 맞도록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 페달을 설치
- **참고사항** : 튜닝용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은 설치시 간섭으로 인한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

THEME

36

제동장치 >>>>

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제동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제동성능 개선을 위해 튜닝용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교환
- **참고사항** : 튜닝용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변경은 인증받은 제품(순정부품 포함)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인증부품과 장착 차종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

THEME

37

연료장치 및 전기·전자 장치 >>>>

연료절감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연료장치 및 전기·전자 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연료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(기계식, 전자식)
- **참고사항** : 연료절감기 설치시 기존의 연료장치의 변경 없이 설치하여야 함

THEME

38

차체 및 차대 >>>>

범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 외관 향상 및 기능향상을 위해 범퍼를 변경
- **참고사항** : 차체 길이변경이 없어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

THEME

39

차체 및 차대 >>>>

에어스포일러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체의 접지력 향상으로 주행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차체의 길이, 너비, 높이 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철제 재질이나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이 있는 구조는 불가함
 - 스포일러에 인증받은 보조제동등 설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가능

THEME

40

차체 및 차대 >>>>

에어댐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자동차 전면부에 바람의 유입, 흐름을 조절하는 튜닝 부품
- **참고사항** : 최저지상고 기준(지면으로부터 10cm)을 만족하여야 함

THEME

41

차체 및 차대 >>>>

사이드스커트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휠더에 추가로 설치하는 바디킷 튜닝 부품
- **참고사항** : 최저 지상고와 너비의 제원 허용차를 준용하여 설치가능

THEME

42

차체 및 차대 >>>>

후드/윈도우 디프렉터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후드/윈도우 디프렉터는 차체 보호를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부착물로 날카롭거나 예리하게 설치하는 경우 불가함
 - 차체 돌출되는 경우 불가함

THEME

43

차체 및 차대 >>>>

후드스쿠프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과열된 엔진의 신속한 냉각을 위해 차체외부의 공기를 엔진으로 유입이 가능하도록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가연성 부분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 보닛의 고유 형태와 형상 변경 없이 설치(보닛 고정장치의 변경 불가)

THEME

44

차체 및 차대 >>>>

윈도우 썬바이저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빗물 유입과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부품
- **참고사항** :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경우 불가함

THEME

45

차체 및 차대 >>>>

범퍼가드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범퍼의 보호목적으로 차체(범퍼)에 설치
- **참고사항** : 제원의 허용차(길이, 너비)이내에 설치하여야 함

THEME

46

차체 및 차대 >>>>

그릴가드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이물질의 유입방지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
- **참고사항**
 - 제원의 허용차 이내에 설치하여야함
 - 보조범퍼와 동시 변경 가능

THEME

47

차체 및 차대 >>>>

휰더커버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차체의 보호 목적으로 차체(휰더)에 설치
- **참고사항** : 제원의 허용차 이내로 설치(너비초과시 튜닝승인 대상)

THEME

48

차체 및 차대 >>>>

썬루프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공기순환과 운전자의 답답함 해소해 주는 장치
- **참고사항** : 차체의 천정프레임을 절개하는 경우 안전성 입증 곤란으로 불가함

THEME

49

차체 및 차대 >>>>

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실내에 설치하는 편의장치(에어컨, 좌석용 테이블 등)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장치에 설치하는 에어컨 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, 예리하게 각이지거나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
 - 인버터 등을 사용하여 고전원으로 구동되는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고전원 위험 표시 및 실내에서 격리하는 구조를 갖추어야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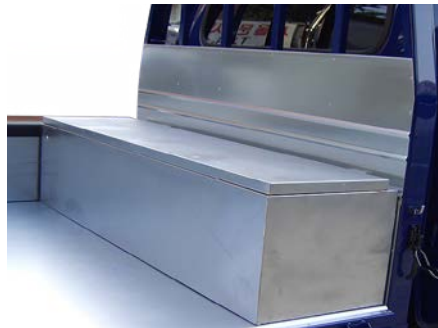
50

차체 및 차대 >>>>

수납함



장착의 예



- 수납함의 크기는 하대길이의 1/2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공구를 별도로 보관 이동 하기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공구등을 크기는 적재함 길이의 1/2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, 초과할 경우 튜닝승인대상임
 - 제원의허용차(중량, 제원) 초과할 경우 튜닝승인 대상임

THEME

51

차체 및 차대 >>>>

블랙박스 작동표시등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운행자료 저장을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 : 블랙박스 제품에 표시되는 작동표시등에 한하여 적용하며, 표시등을 개조 ·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함

THEME

52

차체 및 차대 >>>>

화물탑차 스커트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화물차량의 외관 향상과 공기저항 감소
- **참고사항**
 - 스커트 설치로 인한 제원의 허용차(중량, 제원)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치
 - 후면 스커트를 설치하는 경우 번호판 식별 등화장치확인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

THEME

53

차체 및 차대 >>>>

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하는 보조유압잭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인정
 - 아웃트리거는 튜닝승인대상임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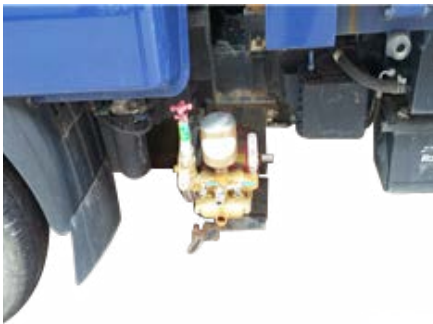
54

차체 및 차대 >>>>

농약살포용 분무기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차체 및 차대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동력인출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분무기
- **참고사항**
 - 농약살포용 분무기를 장착하였을 경우 차체에 돌출되지 아니한 구조이어야 함
 - 벨트, 회전체 노출시 안전성 확보 설치

THEME

55

연결 및 견인장치 >>>>

단순한 전기식 윈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연결 및 견인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험로탈출 및 산악주행용 자동차에 사용
- **참고사항** : 차체제원의 변경이 없어야 함(제원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튜닝 적용)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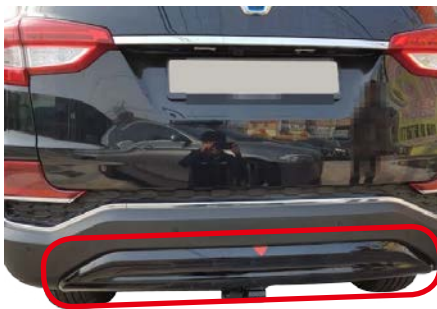
56

연결 및 견인장치 >>>>
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연결 및 견인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한 순정부품용 연결장치(견인장치)
- **참고사항**
 -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생산하는 순정부품을 의미
 -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의 장착은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의 장착은 동일차체에 한해 경미한 튜닝에 해당
 - 최초 제작사의 옵션선택항목이 없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임

THEME

57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화물의 분류적재, 온도조절 등을 위해 설치
- **참고사항**
 - 주로 박스형 화물자동차(내장탑, 냉동탑, 원바디탑)에 주로 설치되나 일반형 카고 자동차에서도 경미한 튜닝으로 허용
 - 단, 중량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튜닝승인대상임
 - 캠핑카의 취침 시설과 유사한 경우 제외

THEME

58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밴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후방 시야확보를 위해 판넬밴을 유리밴으로 변경
- **참고사항**
 -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유리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어야 함(건축, 주택용 유리 사용 불가)
 - 보호봉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(튜닝 세부 업무 규정 적재함덮개 기준 참고)

THEME

59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픽업덮개 제거



장착의 예



제거 전



제거 후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픽업덮개를 설치한 자동차가 탈거(원형)하는 경우
- **참고사항**
 - 튜닝으로 픽업덮개를 설치한 자동차가 픽업덮개를 탈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없이 탈거 가능
 - 픽업덮개 장착은 튜닝승인 대상임

THEME

60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화물자동차 난간대 제거



장착의 예



제거 전



제거 후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난간대를 설치한 자동차가 탈거(원형)하는 튜닝
- **참고사항**
 - 난간대 사이즈변경 및 신규설치는 튜닝승인 대상
 - 제원의 허용차 이내의 난간대 탈거 시 적용

THEME

61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롤 바 (픽업형에 한함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픽업화물자동차의 전복시 차체 보호
- **참고사항**
 - 롤바 설치로 인하여 차체의 길이 너비 높이의 변경이 없어야 함
 - 종량의 허용차 이내이어야 함(초과할 경우 튜닝승인 대상)

THEME

62

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>>>>

픽업형 난간대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: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난간대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함
 - 측면 밀폐형 구조는 불가함

THEME

63

등화장치 >>>>
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등화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소유자의 운전취향에 따른 등화장치 변경
- **참고사항** :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화장치로 제작, 인증된 자동차에 장착된
(자동차 출고용 순정부품) 경우 자유롭게 설치 가능(전조등 포함)
※ 차체의 변형, 가공 등이 없이 호환되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

THEME

64

등화장치 >>>>

LED번호등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등화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번호등 LED튜닝
- **참고사항**
 - 등광색은 백색만 허용함
 - 기존의 전구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에 한하며 점멸되는 구조나 등광색이 다를 경우 불가함

THEME

65

등화장치 >>>>

경광등 제거



장착의 예



제거 전



제거 후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등화장치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경광등을 설치한 자동차가 탈거(원형)하고자 하는 경우
- **참고사항**
 - 경광등 설치 및 변경설치는 튜닝승인 대상
 - 튜닝으로 인한 긴급자동차 지정 해지신청(각 지방경찰청) 별도 진행

THEME

66

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>>>>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



장착의 예


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(단,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)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(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)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(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)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튜닝부품인증된 부품을 설치(장착) 하는 경우
- **참고사항**
 - 튜닝부품 인증현황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(www.katmo.or.kr)에서 조회가 가능함
 - 전산관리 및 조회 : 한국자동차튜닝협회(www.katmo.or.kr)

제3편

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/ 차체 및 차대 / 물품적재장치
/ 승차장치 / 등화장치 / 소음방지장치

THEME

01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길이 초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4호
- **참고사항**
 - 트레일러 후단부 길이 연장(용접)

THEME

02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길이 초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4호
- **참고사항**
 - 트레일러 후단부 길이 연장(용접)
 - 일반형 화물자동차(카고) 길이 연장

THEME

03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길이 초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4호
- **참고사항**
 - (좌) 전체 길이 및 높이 초과
 - (우) 차체 길이 연장

THEME

04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길이 초과(평판 트레일러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길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후단부에 연결고리를 설치한 사례
 - 보조적재함을 거치하기 위해 연결고리를 설치한 사례

THEME

05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높이 초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"차대 및 차체"
- **참고사항**
 - 광고판 · 광고물 설치로 인한 전체 높이 초과 사례

THEME

06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차체 너비 초과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"차대 및 차체"
- **참고사항**
 - 트레일러의 적재함을 임의 변경하여 전체 너비 초과 사례
 - 휠더 돌출로 인한 전체 너비 초과 사례
('18. 2월 차체 너비변경 튜닝 허용으로 차체 너비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가능)

THEME

07

차체 및 차대 >>>>

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차체를 임의 개조하여 운행 자동차의 안전도 저하 사례

THEME

08

차체 및 차대 >>>>

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의 문짝 임의변경 · 범퍼 탈거 사례
 - 자동차 측면 윈도우의 절개 및 임의 개조 사례

THEME

09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"물품적재장치"
- **참고사항**
 -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임의로 탈거한 사례

THEME

10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"물품적재장치"
- **참고사항**
 -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임의로 개조한 사례

THEME

11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카캐리어의 적재용 사다리를 개조하여 물품적재장치로 사용하는 사례

THEME

12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카캐리어의 적재용 사다리를 조작하는 실린더(피스톤)의 위치변경을 통한 물품 적재장치로 사용하는 사례

THEME

13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윈바디 등 박스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상부를 임의 개조한 사례

THEME

14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밀폐형 자동 덮개를 적재함의 보조틀로 사용하는 사례

THEME

15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상승형윙바디의 적재함을 개조(하강 불가)하여 적재함의 크기를 변경한 사례

THEME

16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“물품적재장치”
- **참고사항**
 - 최대적재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튜닝 당시 탱크의 일부를 천공한 부위를 용접하여 적재공간으로 재사용한 사례

THEME

17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“물품적재장치”
- **참고사항**
 - 적재함 내부에 탱크로리를 임의 설치한 사례

THEME

18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“물품적재장치”
- **참고사항**
 - 적재함 내부에 활어통을 임의 설치한 사례

THEME

19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문을 제거한 사례

THEME

20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물품적재장치의 상부에 난간대를 설치한 사례
 -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문을 제거하고 난간대를 임의 설치한 사례

THEME

21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카고크레인의 고리를 제거하고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설치한 사례
(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처벌)

THEME

22

승차장치 >>>>

승차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좌석 임의 탈거로 승차정원 감소 사례

THEME

23

승차장치 >>>>

승차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좌석 하단부에 회전장치를 임의 개조한 사례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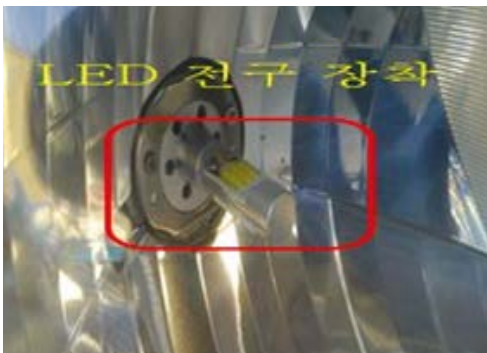
24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“전조등”
- **참고사항**
 - 인증받지 않은 LED 전구 임의 변경 사례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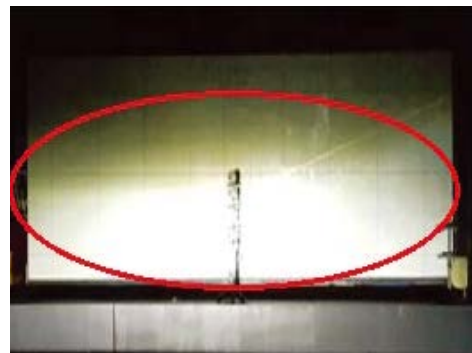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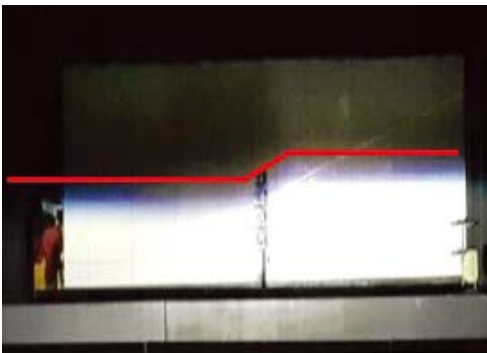
25

등화장치 >>>>

HID(LED) 전조등 비교사례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“전조등”
- **참고사항**
 - 인증받은 등화 설치(좌)의 경우 뚜렷한 컷오프라인 형성
 - 인증받지 않은 등화(우)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

THEME

26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“경광등 및 사이렌”
- **참고사항**
 - 경광등 임의 설치 사례

THEME

27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, 48조
- **참고사항**
 - 써치램프(써치라이트) 임의 설치 사례

THEME

28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로의 임의 개조

THEME

29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인증 받은 등화장치에 필름 등 부착하는 사례

THEME

30

등화장치 >>>>

등화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사례

THEME

31

소음방지장치 >>>>

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소음방지장치를 임의 개조한 사례

제4편

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

원동기 / 조향장치 / 차체 및 차대 / 승차장치
/ 물품적재장치 / 소음방지장치 / 등화장치

THEME

01

원동기 >>>>

원동기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원동기로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(최초제작자 포함)가 동일한 부품(원동기)에 한함
 - 원동기변경으로 차체 및 차대(프레임)의 변경이 없어야 함
 - 원동기 변경으로 소음방지장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변경되는 경우 튜닝대상

THEME

02

조향장치 >>>>

조향장치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조향핸들을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조향핸들 및 부속장치의 변경으로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튜닝승인대상
 - 파이프형 조향장치의 경우 동일한 제작사, 동일한 Ø직경(cm, inch)에 한하여 튜닝 가능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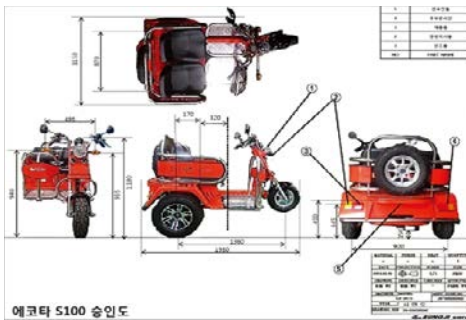
03

차체 및 차대 >>>>

케노피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에 지붕 형태의 구조물(케노피)을 설치하는 경우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
■ **참고사항**

- 차체에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너비제원의 허용 범위 이내 설치 가능
- 동일한제작자의 동일한 이륜자동차 중 캐노피 설치에 대한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승인
 - 최초제작자의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의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 소규모제작자의 인증된 구조로 튜닝 가능

THEME

04

차체 및 차대 >>>>

보조바퀴 추가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차대(프레임) 및 축의 변경 없이 보조바퀴를 추가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보조바퀴설치로 인한 차체크기는 안전기준 2m를 초과하지 않을것
 - 보조바퀴는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 등이 걸리지 않도록 휠 및 타이어를 덮는 덮개를 설치할 것
 - 덮개는 평면도(차체를 상부에서 지면으로 바라볼 때)상 휠및타이어를 모두 덮는 구조일것
 - 가변형 보조바퀴(랜딩기어)의 경우 설치한 너비가 제원의 허용차(너비)를 초과하는 경우 튜닝승인대상

THEME

05

승차장치 >>>>

승차정원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승차정원을 제외한 구조는 승차인의 탑승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
 - 승차정원 증가는 동일차체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범위까지 증가가능
 - 승차정원 증가의 경우 발걸이, 손잡이 필수 설치할 것

THEME

06

물품적재장치 >>>>

물품적재장치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동일한 제작사에서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적재함 크기까지 변경가능
 -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(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를 말한다)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함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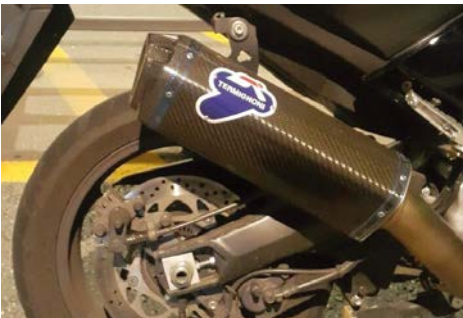
07

소음방지장치 >>>>

소음방지장치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소음방지장치를 변형·손상시켜 배기구를 변경하지 않을 것
 - 적재물 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,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
 -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따라 환경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(순정촉매)의 탈거, 변형, 개조는 불가하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'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'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튜닝허용

THEME

08

등화장치 >>>>

전조등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을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함
 - 전조등 변경으로 인해 차체의 절단 및 변형은 없어야함
 -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, 차체 등에 고정시킬 것
 -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등화의 경우 시험성적서 생략가능
단, 부품상세도(일련번호, 인증번호 등)와 비교제원을 첨부

THEME

09

등화장치 >>>>

안개등(기타 등화장치) 설치·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이륜자동차의 안개등을 변경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- **참고사항**
 - 안개등(기타 등화) 변경으로 인해 차체의 절단 및 변형은 불가
 - 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
 -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우고, 차체 등에 고정시킬 것
 -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등화의 경우 시험성적서 생략가능 단, 부품상세도(일련번호, 인증번호 등)와 비교제원을 첨부

THEME

10

등화장치 >>>

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



장착의 예



※ 긴급 이륜자동차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하는 경우

■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

■ **참고사항**

- 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로 인한 차체의 절단 및 변형은 불가
-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우고, 차체 등에 고정시킬 것
-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우고, 차체 등에 고정시킬 것
- 경광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
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준용

제5편

자유롭게 튜닝(자율)이 가능한 항목(경미한 튜닝)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/ 원동기 · 동력전달장치
/ 제동장치 / 차체 및 차대 / 소음방지장치 / 등화장치

THEME

01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전면 버켓 (바구니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소량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
- **참고사항**
 - 전단타이어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것
 - 허용범위
 - 이륜자동차안전기준 범위 이내

THEME

02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탐박스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승용자동차의 트렁크와 같은 역할
- **참고사항**
 - 탐박스 설치 시 필요한 브라켓(부속품)으로 탐박스 설치 시 하나의 구성품으로 허용
 - 허용범위
 - 이륜자동차안전기준 범위 이내

THEME

03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사이드 케이스 (새들백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승용자동차의 트렁크와 같은 역할
- **참고사항**
 - 사이드 케이스 설치 시 필요한 브라켓(부속품)으로 탑박스 설치 시 하나의 구성품으로 허용
 - 허용범위
 - 이륜자동차안전기준 범위 이내

THEME

04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너클가드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전도 시 운전자 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
- **참고사항**
 - 허용범위
 - 너비 : 좌우각각 50mm이내

THEME

05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핸들발란스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조향장치의 안정감 향상 및 전도 시 조향장치 보호
- **참고사항**
 - 허용범위
 - 너비 : 좌우각각 50mm이내

THEME

06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슬라이더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전도 시 이론자동차의 차체 · 휠 · 소음방지장치 등을 보호
- **참고사항**
 - 허용범위
 - 너비 : 좌우각각 50mm이내

THEME

07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방풍장치 (윈도우 스크린)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주행풍 및 비산물로부터 운전자 보호
- **참고사항**
 - 허용범위
 - 높이 : 2m이내

THEME

08

길이 · 너비 및 높이 >>>>

안테나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편의장치(오디오) 작동을 위한 안테나
- **참고사항**
 - 허용범위
 - 높이 : 2m이내

THEME

09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흡기 및 배기다기관



장착의 예



※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변경 · 훼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흡 · 배기효율 및 경량화 등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

THEME

10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에어크리너



장착의 예



※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변경·훼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흡기효율 향상을 위해 변경

THEME

11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원동기(동력발생장치)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 성능향상 및 커버류 교체

THEME

12

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>>>>

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※ 변속기 종류의 변경이 없어야함(자동 ↔ 수동)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동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경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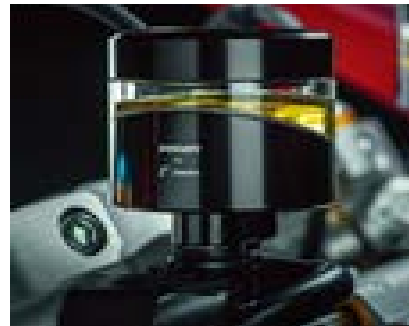
13

제동장치 >>>>

ABS 보조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제동능력 향상을 위해 변경

THEME

14

제동장치 >>>>

캘리퍼 및 부속장치



장착의 예



※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제동능력 향상을 위해 변경

THEME

15

제동장치 >>>>

보조브레이크 페달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운전자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, 예리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설치

THEME

16

제동장치 >>>>

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제동성능 향상

THEME

17

차체 및 차대 >>>>

무릎페어링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운전자 보호 및 공기저항 감소 역할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, 예리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설치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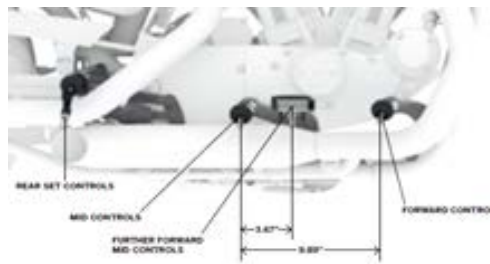
18

차체 및 차대 >>>>

보조발판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운전자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
- **참고사항**
 -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, 예리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설치

THEME

19

차체 및 차대 >>>>

블랙박스 작동표시등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블랙박스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등

THEME

20

소음방지장치 >>>>

배기관 팁



장착의 예



※ 소음기와 최종배기구의 내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드레스업 튜닝효과

THEME

21

등화장치 >>>>

LED 번호등



장착의 예



※ 부품(하우징)의 변경없이 광원만 교체되는 경우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2항
- **경미한 장치 기능** :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변경

제6편

튜닝 승인이 불가한 항목

차체 및 차대

THE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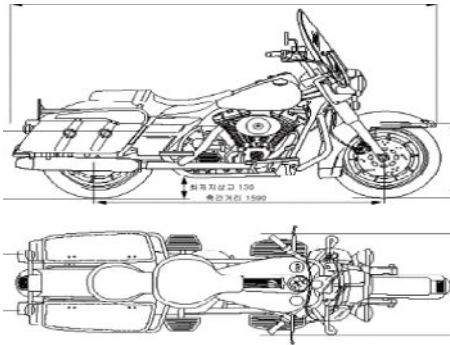
01

차체 및 차대 >>>>

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



장착의 예



- **관련근거**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55조제2항
- **참고사항**
 - 제작 · 인증된 이륜자동차(좌)의 차체를 임의 개조하여 삼륜형 이륜자동차(우)로 변경한 사례



TS튜닝알리고 | <https://cyberts.kr/vtsp>

튜닝에 특화된 일자리 매칭, 교육, 컨설팅, 튜닝 제품 · 기술마켓, 기술 및 사업공모, 튜닝업체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
자동차 튜닝사례집

| 초판발행 | 2019년 12월 23일

| 5쇄발행 | 2023년 10월 20일

| 발행처 |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자동차튜닝처

| 주 소 |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88-7 (울곡동)

| 전 화 | 054-440-3041~3057

| F A X | 0502-384-5497

| U R L | <http://www.kotsa.or.kr>

| 집필진 | 오태석, 김용달, 임영재, 이정두, 김찬현, 박상영, 김호경, 백승진, 김용재, 이상석,
이길용, 임성수, 정지화, 권정택, 유국형, 윤진우, 김병훈, 배 평, 전홍재, 이재형,
김민준, 김동훈, 박규태, 한성길, 변찬호, 조동식, 황유경, 김홍연, 문지연

※ 본 교재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.